※ 본 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시 강의한 원고를 편집한 것입니다.

PL(제조물책임)법 개요

한국PL법연구원

Ⅰ. 제조물책임(PL)법의 도입 배경

1. 제조물책임(PL)법의 도입 배경

☐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광역화 및 심각화

- ○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 제품안전사고의 광범위화
- ○ 제품의 다양화 및 유통범위의 광역화 – 소비자피해의 심각화

☐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 의식의 고양

- ○ 소비자의 4대권리 – 1962년 케네디 대통령
  (알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을 추구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 ○ 소비자자신의권리주장 – 제도상의 권리를 확립

☐ 제조물책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제도의 강화

- ○ 국제적인 입법 추세 – 미국, EU가맹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입법 시행
- ○ 수입업자의 구상권 행사 문제
- ○ 자국민의 보호 및 형평성 문제

2.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 과정

- ○ 1982년 김순규의원 의원입법안 국회 제출
- ○ 일본 1994년 6월 PL법 제정, 1995년 7월 시행에 본격적인 관심.
- ○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추미애의원 외 105명)
- ○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책임법이 공포
-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 부과 근거

☐ 제조업자등은 고도의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에 의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제조판매에 의해 이윤을 얻고 있다.

☐ 제조업자 등은 결함제품으로부터 생긴 손실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널리 소비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 손실을 제조업자 등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스스로 보다 안전한 제품의 제조판매에 노력을 기울일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 기대 될 수 있다.

Ⅱ. 제조물책임(PL)법의 본질 및 해설

1. 제조물책임(PL) 법의 본질과 정의

☐ 제조물책임(ProductLiability)

– 제조물의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함

2. 제조물책임(PL) 법과 민법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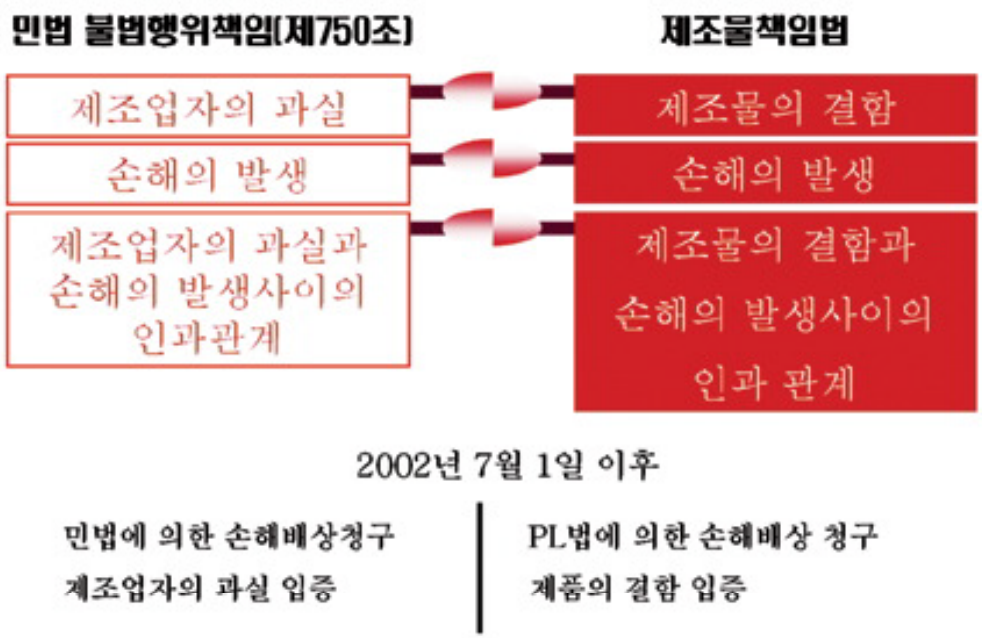

3. 제조물책임(PL) 법과 리콜의 비교

구 분	제조물책임(PL) 제도	리콜 (Recall) 제 도
성 격	민사책임원칙의 변경	행정적 규제
기 능	사후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사전에 위해제품을 회수 이를 통해 예방적.직접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근거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요 건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①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②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우리나라의 품목별 리콜제도의 현황

구 분	위해물품 및 용역	식 품	자 동 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관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검사 공산품
주무부처	물품 및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근거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요 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발생 또는 위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 발생 또는 발생우려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인증 표시기준의 위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공산품
리콜 유형	강제, 자발	강제, 자발	강제, 자발	강제, 자발	강 제	강 제
리콜 방법	수리, 교환, 환급, 폐기, 제품금지	회수, 폐기, 성분배합비율 등의 변경	제작결함의 시정	배출결함의 시정	개선, 폐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시정, 폐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리콜 주체	제조사 또는 유통업자	영업자	자동차제작자 등	자동차 제작자	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판매업자	안전검사의무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
위반시 벌 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병과	1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